

[광주보훈병원] 계약직 업무지원직(고객지원_간병지원) - 휴직대체 직원 채용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광주보훈병원에서 병원 발전을 위해 함께 근무할 전문인을 공개 모집합니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광주보훈병원은 정부의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에 따라 채용절차의 전 과정을 **블라인드 채용**으로 실시합니다.

1. 모집분야 및 자격요건

지원 분야	세부 분야	고용 형태	채용 인원	자 격 요 건 및 우 대 요 건
업무지원직 (고객지원)	간병지원	계약직	1명	(필수) 3교대 또는 상근 근무 가능자
공통 자격조건	(필수) 공단 인사규정 제18조(결격사유 및 임용취소)에 해당되지 않는 자 (필수) 공단 업무지원직 인사관리 시행세칙 제13조(정년)에 따른 정년(60세) 을 초과하지 않는 자			

※ 상기 자격요건 및 우대조건은 **공고 시작일을 기준**으로 하며, **필수 자격요건을 전부 충족**하여야 함

○ 가점사항

구 분	내 용	가산점수
취업지원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각 시험별 만점의 5, 10%
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	각 시험별 만점의 10%

※ 가점은 점수로 환산이 가능한 시험에 한하며 가산점수 항목이 둘 이상인 경우 각 시험별로 응시자에게 가장 유리한 한 가지만 적용(중복 적용 불가)

※ 모든 가산점수 항목은 채용 공고일('26.07.21.)을 기준으로 적용

※ 분야별 채용인원 4인 미만 시 보훈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미적용

(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 제3항의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2. 고용형태 및 근무조건

○ 고용형태 및 계약기간

직 종	직 무	고용형태	계약기간
업무지원직 (고객지원)	간병지원	계약직	2026.08.18. ~ 2027.08.17.

○ 보수 및 기타사항

직 종	직 무	보수 및 기타사항
업무지원직 (고객지원)	간병지원	1. 직무기본급 : 2,025,000원(세전) 2. 근무시간 : 1일 8시간, 주 40시간 * 3교대 근무 또는 상근근무
공통사항		1. 제수당(성과급, 법정수당(야간수당, 연차수당), 급식보조비 등 지급 2. 4대 보험 가입, 본원 진료비 감면 혜택

※ 병원 운영상 필요에 따라 최초 채용 직무에서 담당 직무가 변경될 수 있음

3. 전형일정

전형구분	일 정	합격 발표	비 고
서류전형	2026.07.21.(화) ~2026.07.31.(금) 10:00	2026.08.03.(월)	- 광주보훈병원 홈페이지 - 기본자격요건 충족자 선발
면접전형	2026.08.05.(수)	2026.08.07.(금)	- NCS 기반 면접 - 면접 100% (+가점) - 면접장소 등 개별 연락 예정
합격자 등록	2026.08.10.(월) ~ 2026.08.12.(수) 12:00		- 합격자 서류 제출 - 채용 신체검사 등
임용	2026.08.18.(화)		- 입사 예정일에 입사 가능해야 함

※ 서류·면접전형 합격자 발표 안내는 광주보훈병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

※ 면접시험 장소 및 시간은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별도 공지

※ 상기 일정은 병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전형방법

① 서류전형 → ② 면접전형 → ③ 합격자 서류 제출·신체검사 → ④ 최종합격

구 분	서류전형	면접전형	최종합격
비 율	-	100%	100%
배 점	-	100점	100점
가 점	-	10점	10점
합 격	자격요건 충족자 전원	면접시험(100점 만점 기준) 60점 이상자 중 고득점 순(가점포함)	면접시험(100점 만점 기준) 60점 이상자 중 고득점 순(가점포함)

※ 면접시험 과락 기준 : 면접시험 원점수 평균 점수가 총점의 60% 미만을 득한 경우

※ 최종합격 동점자 처리기준

- ① 취업지원대상자 → ② 면접전형(직업기초능력) 원점수 평균 고득점자
→ ③ 면접전형(직무수행능력) 원점수 평균 고득점자

○ 각 전형별 합격자에 한하여 다음 전형 응시자격을 부여

○ 서류전형 : 자격요건 충족자 선발

- 서류 불합격 사유

구 분	상세내용
결격자	지원자격 미충족 필수제출 서류 미제출 (공고 시작일 기준 면허증 발급 완료된 지원자에 한하며 합격확인서 발급신청서, 취득확인서 등 제출로 필수 자격요건 충족 불가)
	지원서 등 불성실 기재 불성실 작성(예: 미작성, 항목별 동일 답변(복사해 붙여넣기), 의성어·비속어로 작성, 기관명 오기입 등) 일반적인 자기소개서 작성 방법과 달리 불성실하게 작성한 자기소개서
	증빙서류 불일치 증빙서류 검증 결과 지원자격(지원자 성명 등)과 증빙 불일치, 파일 안열림, 식별 불가능(증명서 이름 확인 불가 등) 등으로 서류 내용 확인이 곤란한 경우
	블라인드 위반 (자기소개서) - 입사지원서 내 인적사항, 자격/경력사항, 경험/교육사항 입력란을 제외하고, 자기소개서 작성 시 개인 인적사항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경우 서류 결격 처리 ※ 인적사항, 자격/경력사항, 경험/교육사항 - 본인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와 응시자격, 가점, 우대사항 등의 진위여부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를 제출받고 있으며, 해당 내용은 목적 외 사용되지 않고, 심사위원에게 일절 제공하지 않음 → 온전한 정보 입력(시스템 상 블라인드 처리 예정) 블라인드 처리 항목 성명, 성별, 나이, 출신학교명, 가족관계, 혼인여부, 신체조건(카체중), 종교 등

○ 면접전형

- 각 면접위원별 전문지식, 품성, 복무자세 등 질문(직무·역량면접 진행)

○ 최종합격자 발표 : 광주보훈병원 홈페이지, 채용지원 사이트

- 예비합격자 : 채용인원의 2배수
- 예비합격자 임용가능기간은 최종합격자발표일로부터 1년까지로 하고 그 이후는 임용불가
- 최종합격자 합격취소 및 임용포기 시 예비합격자 활용

5. 접수방법 및 제출서류

○ 서류접수방법 : 채용지원 사이트 온라인 접수(<https://bohun.fairyr.com/>)

○ 제출서류

구 분		세 부 서 류
필수 제출(지원자 공통)		·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입사지원 사이트상 작성)
가점 해당자	취업지원대상자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또는 상이등급이 기재된 국가유공자 확인서 또는 상이등급이 기재된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서)
	※ 가점 해당자 증빙 발급경로 - 정부24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국가유공자 확인서,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서	
주의 사항	※ 필수제출서류 및 각종 증명서는 공고 시작일 기준 발급 완료되어 유효한 지원자에 한하며, 필수 제출서류의 경우 합격확인서, 발급신청서, 취득확인서 등 제출로 필수 자격요건 충족 불가 ※ 증빙서류는 지원자격, 우대사항 등을 검증하는 용도로만 사용되며, 평가위원회에 제공되지 않음	

-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 온라인 접수 양식에 맞게 작성
- 자격증, 각종 증명서 등 관련 서류 : 온라인 접수 시 첨부파일 업로드

※ 마감일(2026.07.31.(금) 10:00)까지 지원한 응시자에 한해 서류전형을 진행

※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 이후에는 지원서 수정 및 제출 불가

※ 필수 제출서류 미제출 시 서류전형 불합격 처리

6. 채용서류의 반환 등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지원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간 제출한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제출 서류는 제외함)
-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등기우편요금은 수신자 부담이며, 팩스번호 및 담당자 이메일은 별도 안내)
- 공단은 지원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이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7. 기타사항

- 모집분야별 중복응시는 불가능하며, 중복지원 시 불합격 처리됩니다.
- 지원 자격과 가점·우대사항은 채용공고일('26.07.21.)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입사지원서(자기소개서 포함)에 기재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증빙서류와 대조하여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지원서 작성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사지원서(자기소개서 포함) 작성 시 기재착오·누락, 합격자 발표 미확인, 연락불능 및 서류 미제출 또는 확인이 불가능한 서류 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므로, 제출서류·지원서 작성 항목, 시험일정과 합격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합격자 발표 및 전형일시 등 구체적인 채용일정은 각 채용단계별로 병원 [입사지원 사이트\(https://bohun.fairyhr.com/\)](https://bohun.fairyhr.com/)를 통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 채용전형 및 일정 등은 병원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병원 입사지원 사이트를 통해 공고 예정입니다.
- 최종 발표 또는 임용 후라도 신체검사 및 신원조회 결과 등 채용 결격사유 해당 시 합격을 취소합니다.(입사 후 발견 시 합격취소 가능)
- 신체검사 비용은 병원이 부담하되 자세한 내용은 최종합격자 대상으로 안내 예정입니다.
- 가산점의 적용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릅니다.
-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우리병원은 채용과 관련된 인사 청탁을 절대 금지하며, 채용과정에서 부당한 인사 청탁이 적발될 경우 해당 지원자 사전 배제, 합격 후에도 불합격 처리, 채용 시 제한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는 병원이 지정한 근무일부터 근무하여야 합니다.
- 채용 전형 및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등 민원은 채용지원사이트 '질문하기' 게시판에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보훈병원 인사담당자(☎062-602-6024)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7. 21.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광주보훈병원장

※ [붙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인사규정 제18조(결격사유 및 임용취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에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 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 6의2.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9.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
10. 신체검사 결과 감염성 질환 또는 육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된 사람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사람
12. 공단 또는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이후 5년을 경과하지 않은 사람
13.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또는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에 해당하는 사람

② 임원 및 직원이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적발 즉시 채용을 취소한다.

1. 채용과정에서 청탁 등 채용비위가 발생한 경우
2. 임직원의(퇴직자 포함) 가족과 친척을 부당하게 채용한 경우